원통형 선별기 점검작업증 끼임



재해개요

2019.03.12.일(화) 인천 소재 건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업체인 ○○○의 토분 선별 작업장에서 설비점검 중이던 재해자가 가동중인 원통형 선별망과 이를 둘러싸는 고 정프레임 사이에 끼여 사망

재해상황도







재해발생원인

○ (불안전한 상태) 선별기 상부 보호덮개 제거

- 최초 설치시 선별기 상부 전면에 보호덮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, 선별망(Ø30 정도) 에 진흙이 엉켜 붙어 이를 쉽게 제거하기 위해 설비 운영중 보호덮개 제거

○ (불안전한 행동) 청소·점검 등의 작업시 기계 운전정지 미실시

- 청소·점검 시 기계 운전정지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하나, 전원이 차단된 후에도 설비 구조상 선별망이 정지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고, 이상소음 발생원을 찾기 위해서는 설비가 동작중이어야 하므로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점검작업 실시

재발방지대책

○ 정비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후 작업 실시

- 청소·점검 등의 작업 시에는 반드시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후 작업하여야 하며, 불시 기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(LOTO)를 하여야 함.

○ 원통형 선별기 상부 보호덮개 설치

- 원통형 선별기의 상부에는 회전하는 선별망으로부터 근로자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의 보호덮개를 설치하고 해당 지역에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,
- 설비의 점검 및 보수, 청소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해체하였더라도 해당 작업을 완료 후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함.